

환경부고시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및특별종합대책에 대한 청원

심사 보고

1995. 12. 18

교육사회위원회

1. 청원일자 및 청원자

가. 청원일자 : 1995년 12월 8 (제 95 - 3)

나. 청원자 : 충북 옥천군 청성면 대안리 147-5 신한중의 1,308인

2. 심사일정

○ 제120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95. 12. 18)

○ 의견청취

○ 의견개진 및 심의의결

3. 소개의원 및 출석공무원과 진술인 및 참고인

- 소개의원 : 유재철, 송재주, 이희복, 이민희의원(대표소개의원:이희복)

- 출석공무원 :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 참고인 진술 : 신한중(청원인)

김상현(옥천군 환경보호과장)

정영수(충청북도청 고문변호사)

이희복(충청북도의회 의원)

이태우(옥천군의회 의원)

4. 첨 원 요 지

□ 90. 7. 19 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을 근거로 환경부고시(90-15) 16호에 의거

지정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권역 지정에 따른 특별종합대책의 마련으로 주민의 피해의식(개발제한등)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 대청호 건설로 인한 피해 상황(예 : 옥천군)

· 인구 감소 (건설 당시 103,066명 → 현재 67,312명)

· 농지 면적 감소, 안개 일수 증가(년 26.5 → 46.8일)로 농작물 수확량 감소

· 골재 생산량 감소로 타 지역 골재 고가 구입

· 각종 쓰레기 증가로 환경오염 가중 - 전염병 확산

□ 수질보전특별대책을 지정 고시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법에 근거로 고시할 수

있으나 이번 환경부고시 개정안은 다른 법령을 초월한 초법적인 고시로 국토

이용관리법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고 있는 것임

□ 그러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근거를 두고 마련한 특별대책지역과 대책내용

은 엄연히 위법으로 환경부고시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법성 여부와

90년이후 지원상황 그리고 현행 고시의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1. 환경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고시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에 대하여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2. 특별종합대책에 명시된 지원대책에 따라 피해대책 지역에 연차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환경조성사업, 주민소득증대사업에 투자된 내역을 밝히고, 지원되지 않았다면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엄중 문책할 것

3. 재산권의 사용을 제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인 규제만 강요하는 현행 고시를 폐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영만)

가. 내용

- 환경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고시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에 대하여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 특별종합대책에 명시된 지원대책에 따라 '90년도 수준으로 피해대책 지역에 연차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환경조성사업, 주민소득증대사업에 투자된 내역을 밝히고, 지원되지 않았다면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엄중 문책할 것
- 재산권의 사용을 제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인 규제만 강요하는 현행 고시를 폐지하여 줄것을 요구

나. 검토의견

- 환경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고시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 대책의 위법성 여부에 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다를 사안이 아닌 것으로 국회 및 헌법기관등 관계기관에 청원인등이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사항으로 본 청원 내용은 수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특별종합대책에 명시된 지원대책에 따라 피해대책지역에 연차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환경조성사업, 주민소득증대사업에 투자된 내역을 밝혀 주고, 지원되지 않았다면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엄중 문책을 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부고시 제90-16호 (환경처)에 명시된 지원대책 지원사업의 대상은 수질보전기초시설설치, 생활환경조성사업, 소득원개발사업의 3가지 사업으로 하는 것이며 재원의 조달은 '90년도의 재산상의 기준에 따르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규제기준 강화로 인하여 방지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자에게는 환경오염방지 기금을 우선적으로 장기저리 융자토록 하는 것이며

추진 방법은 대청호의 국고지원사업은 충북도지사가 매년 2월말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에 요청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익년도 예산사업에 우선하여 반영토록 하고 특히 소득개발사업은 연차별로 확대함으로 되어 있는 바

본 청원내용은 수용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내용과 관계부처와 협의 또는 건의했던 사항, 피해대책 지역에 지원된 국고지원금 책정 및 배정내역과, 배분실적을 밝히고 지역주민을 위해 보상기준에 충실히 노력을 했는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공무원 신상에 관한 문제는 공무원법 및 기타 관계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재산권의 사용을 제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인 규제만 강요하는 현행 고시를 폐지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인류 문명의 발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를 존중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볼때 환경보존을 위한 규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가 국민과의 관계에서 기득권적 부담원칙, 개발이득금 환수 원칙등은 철저히 지키면서도 5000년 역사이래 거주해온 주민의 이주와 부담이라는 면은 거의 존중되지 못해온 바

기존에 국가가 환경보존을 위한 시설 및 투자가 거의 미약했던 것을 미루어 이제라도 국민의 환경존중 의식을 제고하여 예산을 집중하여 기본적 근거를 마련한뒤 규제 및 기준을 어길 경우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인데 국민의 선진의식과 국가의 기본 투자를 세대로 하지 못한채 일방적인 규제강화는 옳지 않다고 사료되어

청원인 소개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회의에 부의시켜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듣고 의결을 거쳐 관계부처에 건의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관계 부서 의견 및 진술인 의견

□ 위법성 여부

(청원인 : 신 한 종)

- 대표 소개의원 이희복이 의원의 의견으로 대신 하겠음

(참고인 : 대표 소개의원 이희복)

환경부고시 90-15, 16호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 종합대책은 환경보전법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본 고시가 확정고시된 15일 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부칙 4조에 등 고시가 환경정책 기본법 22조에 근거를 둔 고시로 인정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법 22조에 중앙관계부처의 장과 해당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이행하지 않아 특별종합대책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여

본 고시는 제정 당시부터 타법에 상충되는 위법한 고시가 될 수 밖에 없었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지전용의 제한,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에 의한 시행령 제13조 준도시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 제14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제17조 자연 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토지 이용 및 공장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법률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부분을 등 고시는 예외 조항없이 사용을 제한하여 앞에서 열거한 법률과 상호 상충하고 있으며

통상산업부 소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는 특별조치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제16조 공장 증설에 관한 특례, 제18조 준도시 지역안에서의 초지 전용에 관한 특례, 제19조 보전임지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의 특례 등으로

기업활동의 규제를 원화하고 있어 등 고시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과 상충하고 있음

본 고시가 당초 고시의 제정목적을 달성하려면 상충되는 타법 관련기관과 협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획기적인 지원 방안과 수용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임

(참고인 : 충청북도 고문변호사 정영수)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시한 개정고시안은 위법이 아님
- 단지 법에 명시한 각종 규제등이 다른 법률과 상충되는면 등을 검토하여 위법의 사항을 가려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

(참고인 : 옥천군청 환경보호과장 김상현)

입법 미비와 특별법인 국토이용관리법등에 대해 위법임

□ 지원대책

(집행부: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 종합대책에 의거 '90년도는 종합대책에 명시된 예산이 반영되어 지원하였고 해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처별 협의를 거쳐 부처별로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 대청호 특별지역을 지정하여 국고보조금이 책정되지 않아 특별지역에 지원된 실적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고 그 지원액이 미미하였던 것은 사실이며 해마다 계획을 수립 관계 부처별로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청 하였음
- 향후 대청호지역에 대한 지원은 주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향상시키고 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집중적으로 대청호지역 지원 및 수질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현행고시 폐지

(교육사회위원회 의견조정 : 이길하 간사 외 7명)

- 청원인, 소개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회의에 부의시켜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듣고 의결을 거쳐 관계부처에 건의

7. 질의 및 답변

□ 위법성 여부

○ 김준석 의원(질문)

고문변호사는 위법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는데,

참고인, 육천군 환경보전과장님은 위법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김상현 (육천군청 환경보호과장)

- 토지이용, 국토이용관리법 등을 배제한 고시는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하였음
-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논의하기가 어려움
- 위법은 위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헌이라 하였음
- 나름대로의 법의 해석, 법의 흐름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법을 위법이라고 하였음

□ 지원대책

○ 김준석 의원(질문)

규제법안이 다른 댐에는 있는데, 팔당댐, 대청댐 만이 규제된 이유는

○ 조규린 (충청북도 보사환경국장)

- 팔당, 소양, 안동, 대청댐 등 전국에 7군데 댐이 있음
- 팔당, 대청댐만이 규제를 받고 있음
- 타 댐들은 규제받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팔당, 대청댐이 먼저 지정이 된 것 같음

◦ 김준석 의원(질문)

외국의 예로는 규제가 없는 줄 아는데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 조규린 (충청북도 보사환경국장)

- 대만이 경우는 주민들 자체가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음
(특별법을 만들려고 함)
- 일본의 경우는 정책이 잘 되어있음

◦ 김준석 의원(질문)

주민이 앞장서서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신한중 (청원인)

- 지금 현재 정화처리시설 등을 통하여 수질기준 COD가 1.5ppm까지 내려감
-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민들은 충분히 노력하였다고 봄

8. 심사 결과

□ 위법성 여부

지방의회에서 다른 사안이 아닌 것으로 국회 및 헌법기관등 관계기관에 청원인 등이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사항으로 본 청원 내용은 수용하지 않음

□ 지원대책 및 공무원 문책

청원으로 수용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내용과 관계부처와 협의 또는 건의했던 사항, 피해대책 지역에 지원된 국고지원금 책정 및 배정내역과 배분을 철저한 기획과 노력을 통하여 청원인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충청북도로 하여금 처리

공무원 신상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통하여 다루어져야 할 것임

* 청원 내용

특별종합대책에 명시된 지원대책에 따라 '90년도 수준으로 피해대책 지역에 연차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환경조성사업, 주민소득증대사업에 투자된 내역을 밝히고, 지원되지 않았다면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엄중 문책할 것

현행고시 폐지

청원인, 소개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청원으로 수용 본회의에 부의시켜 제안 설명과 건의안을 듣고 의결을 거쳐 관계부처에 건의

9. 기타 필요한 사항 : 현행고시 폐지 건의안

별첨

10. 의견서

첫째

위법성 여부는 의회에서 다를 사항이 아니므로 청원인이 국회 및 헌법기관 등을 통하여 해결할 사항으로 청원으로 수용치 않음이 타당하고

둘째

특별종합대책에 명시된 지원대책에 '90년도 수준으로 피해지역에 연차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환경조성사업, 주민소득증대사업에 투자된 내역을 밝히고, 지원되지 않았다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 내용은 청원인과 소개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청원으로 수리하여 충청북도로 하여금 기본 계획 수립내용, 관계부처와의 협의했던 사항, 피해대책지역이 지원된 국고 지원금 확정 및 배정내역, 배분 등을 충청북도가 밝혀야 할 것이며, 관련 공무원 문책은 공무원법 등을 통하여 처리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셋째

현행고시 폐지에 대하여는 청원인 및 소개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회 차원에서 폐지 건의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